

● 제314회 ●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70)

2022. 9.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70

I. 동의안 개요

1. 제출경위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22년 08월 29일
- 다. 회부일자 : 2022년 09월 02일

2. 제안이유

- 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이용자 및 그룹홈의 장기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복지분야에 축적된 자원과 지식·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사업 개요
 - 위탁사업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 운영·관리
 - 위탁방식 : 사무형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3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

나. '22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조건 이행)

다. 주요위탁 내용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 대체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 그룹홈 이용상담 및 이용대상자 선정 지원
-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서비스이용 전환 지원
- 그룹홈에 필요한 자원 연계
-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 자문
-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700백만원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센터를 신규 설치·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됨.

2 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배경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¹⁾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에서 사회통합과 자립을 목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소규모 거주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자기선택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강화되었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와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특히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지역사회 자립생활 강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음.²⁾

- 서울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가정과 동일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누리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이 일반 가정과 같은 주택에서 4명이 함께 거주하며, 사회재활교사에 의한 서비스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 지역사회 소규모 주거시설이라 할 수 있음.³⁾
- 2022년 9월 기준 서울시에는 총 166개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자치구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자치구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현황 ('22.9월 기준)

(단위 : 개소)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20	11	9	18	6	1	8	6	13	10	5	2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5	7	4	2	12	8	3	1	11	1	2	1

※ 동대문구 제외 총 24개구에서 운영 중

-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총괄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2002년 6월부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오고 있었음.

2) 현명이·권혜영(201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3) 현명이·권혜영(2019).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이와 관련해 2021년 12월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해당 조례 제8조4)에서 시장이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 조례 제11조5)에서 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해당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운영현황

- 2022년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690백만원을 편성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4)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장애인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용자 및 그룹홈의 장기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2.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대체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4. 그룹홈 이용상담 및 이용대상자 선정 지원
 5.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서비스이용 전환 지원
 6. 그룹홈에 필요한 자원연계
 7.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 자문
 8.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 5)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장애인 그룹홈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을 임면하고 그 밖의 인력은 센터장이 임면한 후 시장에게 보고한다.
- ③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 소재지 : 강남구 도곡로 416 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
- 조직 및 인력 : 1센터 1팀 5명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
- 주요 사업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역량강화 (그룹홈 직원 교육, 이용자 역량강화, 그룹홈 자문)
 - 대체인력 지원사업
 - 시설 운영자 및 이용인 대상 상담지원
 - 외부 자원연계 사업

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

- 집행기관에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이용인과 시설운영의 장기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고, 행정사무의 능률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 민간위탁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 : 장애인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센터 운영·관리
- 위탁방식 : 사무형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3.1~2025.12. (3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 위탁내용
 - 그룹홈 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 대체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 그룹홈 이용상담 및 이용대상자 선정 지원
- 지역사회 소규모 거주시설로의 서비스이용 전환 지원
- 그룹홈에 필요한 자원 연계
-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 자문
- 그 밖에 시장이 정한 사항

- 집행기관에서는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차년도 예산에 700백만원을 편성해 민간위탁으로 사무를 수행할 예정임.
- 해당 사무의 경우 기존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개인 또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하는 사업을 의미함.
 - 즉, 보조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비영리, 공익성 있는 사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 할 서비스를 민간과의 협약을 통해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을 의미함.⁶⁾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22)

- 민간위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고, 보조금의 지원은 사무가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자금의 사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 이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⁷⁾
- 민간기관에 지방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기존에 보조사업으로 진행 시 예산확보,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등 절차 이행에 따라 시일이 소요되어 서비스 공백발생이 불가피했던 상황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라. 해당 사무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각종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설치가 시장의 책무로 규정됨으로써, 기존에 보조금 사업을 통해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해당 동의안은 법적으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공동생활 가정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중요한 기관으로, 서울시 전역에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의 운

7) 홍정선(2013). “지방자치법 상 민간위탁의 개념-행정실무상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13(4), 85-107.

영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3 종합의견

-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수용·보호해 왔던 흐름에서 벗어나 탈시설 등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자립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부에서 발표한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르면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소규모 거주시설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정원 축소유도, 기능보강 지원 등으로 거주시설의 소그룹 시설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함.
- 본 동의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는 이러한 정부의 장애인 정책의 흐름과도 일치하며,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겠음.

문 의 처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